

해외신탁 신고제도 안내

2026년 해외신탁 신고가 시작됩니다!



해외신탁 신고제도란?

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2025년 중 설정 또는 유지하고 있는 **해외신탁 정보**를 **2026년 6월 30일까지** 국세청에 **제출**하는 제도입니다.

해외신탁 신고제도 주요 내용



신고 의무자

외국법령에 따라 신탁법에 따른 신탁과 유사한 것을 설정(자산을 해외신탁에 이전)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인 위탁자 (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)
* 해외신탁자산을 실질 지배·통제하는 경우에는 매년 제출, 그 외의 경우에는 설정한 연도에 대해 제출



신고 기한

「소득세법」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「법인세법」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*
* (예시) 사망 또는 비거주자로 전환되지 않은 거주자, 사업연도 종료일이 12월말인 내국법인은 6월 30일까지 신고



신고 내용

위탁자·수탁자·수익자 인적사항, 해외신탁 보유현황, 해외신탁별 명세 등



신고 서식

해외신탁명세서(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2 서식)



과태료

- ① 미·거짓신고금액의 10%(1억원 한도) 부과
- ② 미·거짓신고한 자료에 대해 자료 제출 또는 보완요구를 받고도 그 요구에 불응한 경우 해외신탁 재산가액의 10%(1억원 한도) 추가 부과
- ③ 미·거짓신고금액에 대한 출처 미소명 또는 거짓 소명시 미·거짓 소명금액의 20% 과태료 추가 부과

※ 해외신탁 신고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신고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하여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.

해외신탁 신고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

국세청 홈페이지 (국세정책/제도 > 국제조세정보 > 국제조세 주요 신고제도 > 해외신탁신고)를 참고하시거나,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상담센터(☎126→2→6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